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에 관련된 대한이식학회 업무 규정

2011년 12월 9일 제정
2012년 4월 13일 개정
2012년 9월 4일 개정
2014년 4월 18일 개정
2014년 12월 8일 개정
2015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3월 28일 개정
2018년 9월 10일 개정
2020년 12월 4일 개정
2021년 2월 1일 개정
2026년 2월 12일 개정

1. (목적) 본 업무규정은 국외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위한 대한이식학회의 업무를 규정한다.

2. (참가지원의 원칙) 국외학술대회 참가자의 참가지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에 준하여 운영한다.

3. (지원 가능한 국외학술대회의 요건) 대한이식학회가 지원 가능한 국외학술대회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이식학회 회원이 참가지원을 요청한 국외학술대회로 ATC(American Transplant Congress), TTS(The Transplant Society), TTS 협력학회(CAST(Congress of Asi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ESOT(European Society for Organ Transplantation)), ILTS(International Liver Transplantation Society) 혹은 국외학술대회 심사위원회(구성: 이사장, 기획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국외학술대회
   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공고된 국외학술대회로, 대한이식학회가 참가 선정단체로 승인이 된 국외학술대회
   다) 대한이식학회가 해당 국외학술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참가지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라) 국내 개최 국외학술대회는 국외학술대회로 간주한다.

4. (지원자의 조건) 대한이식학회의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당해 연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나) 국외학술대회 좌장, 연자, 토론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1인 포함)는 국외학술대회 주최자 측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이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1인 외 공동저자 1인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자(주저자)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가능하다.)

5. (여행사 지정) 대한이식학회는 국외학술대회 참가자의 여행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하여 각 국외학술대회마다 대한이식학회 공식지정 여행사를 지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모집과 선정) 국외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및 선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한다.
   가) 국외학술대회 참가자 신청은 대한이식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국외학술대회 개최 2달 전에 공지한다.
   나) 국외학술대회 참가자는 대한이식학회 기획위원회에서 국외학술대회 개최 1달 전에 심사하여 지원자를 선정한다. 참가자 심사 및 선정 결과는 상임위원장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원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승인된 지원자 숫자(지원 가능 숫자) 내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원자는 해당연도 대한이식학회 국외 학술대회 지원을 2회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7. (지원내역)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의 범위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이며, 각각의 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비
      A. 항공비는 이코노미 스탠다드 클래스로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 왕복 운임 (보딩패스 반드시 필요)
      B.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우 현지 교통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여 학술대회당 10만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나) 등록비: 사전등록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다) 식대: 학술대회 개최지역을「공무원 여비규정」[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1일당 가등급은 10만원, 나등급은 8만원, 다등급 6만원 라등급 5만원으로 정액 지원하되, 결제한 영수증을 증빙하여야 함. 다만,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라) 숙박비: 국외의 경우 1박당 35만 원 이내까지만 지원한다. 학술대회 1일 전부터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하되,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의 부수비용 지원은 불가하다.
   마) 정산 시 적용환율은 국외학술대회 시작 전인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을 적용

8. (지원정산) 국외학술대회 지원 정산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완료되어야 한다.
   가) 지원자의 학회 초청장(좌장, 연자, 토론자) 또는 초록 채택 메일 사본 및 결과 보고서
   나) 지원자별 지원 내역 및 영수증 원본
   다)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는 국외학술대회 종료 후 3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지원자별 정산액 중 5%는 대한이식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마)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보완서류 포함)를 기간 내 미제출 시, 정산액 중 10%를 대한이식학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며, 해당 학술대회 종료로부터 2년간 참가자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바) 정산을 위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간 종료로부터 30일 이상 미제출 시, 해당 학술대회 참가자지원 정산이 무효화되고, 해당 학술대회 종료로부터 2년간 참가자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9.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을 따른다.

10. 이 규칙은 대한이식학회 상임위원장회의 승인 후 바로 시행된다.

[별첨 1]「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별첨 2] 국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을 위한 대한이식학회 기여도 평가항목

선제조건		
선제조건		설명
승인된 국외학술대회인가?	필수	대한이식학회에서 위임장 수령 후 확정.
대한이식학회 정회원 혹은 준회원 등록여부	필수	지원자 심사 전에 정회원 혹은 준회원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해당 국외학술대회 발표자인가?	필수	증빙자료를 대한이식학회에서 확인. 하나의 연제에 대하여 주저자 및 공저자 포함하여 2인까지 지원 가능
당해 연도 대한이식학회 연회비가 납부되었는가?	필수	대한이식학회 연회비 완납 확인
대한이식학회 기여와 참여 정도의 점수항목		
평가항목	배정 점수	점수 산정방법
1. 대한이식학회 고문, 자문 및 상임위원장이었나?	10	고문, 자문, 상임위원장(현직 및 과거 경력자)
2. 해당 연도의 각 위원회의 위원인가?	10	현재 재임 중인 각 위원회(정규 및 특별)의 위원은 5점을 부여한다.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1건당 5점을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당 연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 연회비를 납부하였는가?	6	연회비 완납 1건당 3점을 부여한다.
4. 해당 연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참가하였는가?	8	각 학술대회 참석 당 2점을 부여한다. 참여 여부는 학술대회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5. 해당 연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좌장으로 참여하였는가?	4	각 학술대회 좌장 참여당 1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좌장을 담당한 경우에도 1점만 부여한다.
6. 해당 연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가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춘계/추계)에 구연 발표자로 참여하였는가?	8	각 학술대회 구연 발표자 참여당 2점을 부여한다. 단 같은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구연 발표를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 2점씩 부여하나, 본 항목의 점수가 8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연 발표자는 해당 학술대회 프로그램집에 게시된 발표자로 정의한다.
7. 해당 연도 이전 2년간의 대한이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참여하였는가?	16	각 대한이식학회 게재 논문당 4점을 부여한다. 해당기간 중 게재된 논문의 숫자만큼 점수를 부여하되, 본 항목의 점수가 16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동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각각의 공저자에게 4점씩 부여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논문의 형식(원저, 증례, 종설, 기타보고 등)에 관계없이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
8. 해당 국외학술대회 회원인가?	8	해당 학회 회원 여부인지 확인한다.

9. 해당 국외학술대회에서 자유 연제 구연 발표자인가?	20	Mini-oral을 포함한 구연 발표 시간이 명시된 구연 발표자인 경우에는 20점을 부여한다. 본 항목은 오직 발표자 1인에게만 부여한다.
10.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지원자가 1인인가?	10	제출된 초록에 대하여 1인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10점을 부여한다.
참여 및 기여도 총점	100	총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경력이 없는 자 중에서 3항(연회비 납부 실적), 9항(자유 연제 구연자), 7항(대한이식학회 게재실적), 6항(학술대회 구연 실적), 5항(학술대회 좌장 실적), 4항(학술대회 참가실적)의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상기까지의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